

## 울산 중구 다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90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. 28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- 2022. 3.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봄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,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근거법규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승인 및 동의)

#### 나. 위탁의 필요성

-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
-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자원연계 등 강점이 높음
- 동일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,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

다. 위탁 대상시설 및 기간

시 설 명	위 치	시설면적	위탁기간
울산 중구 다봄행복센터	중구 중가 3길 15 (유곡동) 중구종합사회복지관 4층	306.49㎡	2022. 4월 ~ 2024. 6월 (2년 3개월)

라. 위탁사무의 범위

- 울산 중구 다봄행복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
- 그 밖에 울산 중구 다봄행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마. 수탁자 선정방법: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사

바. 2022년도 소요예산: 71,760천원(국 28,320, 시 15,720, 구 27,720)

3. 추진일정
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: 2월
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: 3월
- 위·수탁 협약 체결: 3월

4. 참고사항

- 근거법규
- 울산 중구 다봄행복센터 시설 현황

# 참 고 사 항

## 아동복지법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6조 (승인 및 동의)

-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 - 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  - 2. 청소,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
## 울산 중구 다봄행복센터 현황

### □ 시설개요

- 소재지: 중구 종가 3길 15(유곡동) 중구종합사회복지관 4층
- 시설규모: 306.49m<sup>2</sup>(돌봄센터192.58, 어울림공동체 84.22, 공용부29.69)
- 주요시설
  - (돌봄센터) 돌봄공간, 사무공간, 조리실, 화장실
  - (어울림공동체) 회의실, 프로그램실 등

### □ 세부내용

#### 가. 울산 중구 다함께돌봄센터

- 규모: 192.58m<sup>2</sup>
- 주요시설: 돌봄공간, 사무공간, 조리실, 화장실
- 운영인력: 2명(센터장, 돌봄교사 1인)
- 정원: 24명(만6세 ~ 12세, 초등학생 아동)
- 내용: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제공
- 운영시간(월~금): 학기중(13:00~19:00), 방학중(09:00~19:00)
- 이 용 료: 월 6만원(간식비 4, 프로그램비 2)
- 예 산: 65,760천원(국 28,320 시 15,720, 구,21,720)

#### 나. 어울림 공동체

- 규모: 84.22m<sup>2</sup>
- 주요시설: 회의실, 프로그램실 등
- 운영인력: 12명(담당자1, 자원봉사 11)
- 내용: 주민참여를 통한 자조활동(주민쉼터 운영 등)
- 운영시간: 평일(09:00~18:00)
- 예 산: 6,000천원(구)

### □ 향후계획

- 2022. 3. : 위탁체결